

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(제14조의4제6항 관련)

1. 공통 사항

- 가.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의 시료 채취, 재활용 시설 및 공정, 재활용 대상 부지(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)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나.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가목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 채취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에 대하여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 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의 함유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.
- 다.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위해성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방법 외의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2.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

- 가. 제품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·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·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.
- 나. 가목 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(시연공정 또는 대체 공정을 포함한다)에서 대기·수질·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,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.

3.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

- 가. 재활용 대상 부지가 1)부터 8)까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.
 - 1)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
 - 2) 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
 - 3)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
 - 4)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

- 5) 「지하수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
- 6)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
- 7) 「환경보건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
- 8) 그 밖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보호·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지역

나.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·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·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.

다.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출시험 및 대상 부지의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과 대상 부지 토양과의 반응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.

라.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 및 대기·수질·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. 이 경우 대기·수질·토양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시험·분석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어 직접 시험·분석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시험·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마.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.

바. 재활용하려는 부지의 생물생장 및 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적용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사.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바목에 따라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, 재활용 대상 부지의 지질 현황, 재활용 이후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통보해야 한다.

아.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,000톤 미만이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,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재활용 대상 부지가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는 제외한다.

